

영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리에 대한 Q&A

Q1. 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 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Q2.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는 주로 호흡기 방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 등을 흡입하거나 손이나 눈에 직접 접촉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영아가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시설 내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는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면서 격리인 상태라면 보호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코로나19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로부터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접촉하며 직접 돌보는 보호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며, 아이의 분비물이 튀거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을 같이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부모(또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영아에게 어떤 처치가 시행되나요?

A. 아이는 보호자와 매우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음성이라면 부모와 격리를 시키고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4일간 아이에게 발생하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영아나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나요?

A.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엄마도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면 직접 수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 합니다. 엄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수유를 하는 경우 긴 팔 가운과 같은 보호구 착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아는 감염되지 않았고 엄마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라면 모유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유무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므로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6.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에게 분유 수유나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유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식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만든 이유식을 1회분씩 용기에 담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Q7.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가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시설 내 격리 중일 때 아기의 기저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변이나 소변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감염시키는데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관리됩니다. 보건 당국에서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한 후 기저귀를 봉투에 담고, 이후 2차 소독하여 밀봉하여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담습니다. 전용용기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을 하고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보관하면 이후 수거가 됩니다.

Q8.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가 격리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장난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하거나 격리 해제 이후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5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Q9.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의 옷과 침구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영아는 성인과 달리 콧물, 구강 분비물, 토사물 등이 많아 옷과 침구류(침대 시트, 베개 덮개, 이불, 담요 등)를 자주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세제와 소독제로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의 세탁을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 처분하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 후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500 ppm 권장)*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Q10.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를 어떻게 목욕시켜야 하나요?

A. 보호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를 목욕시킬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사용 방법

- 희석배율 0.1% (1,000 ppm) 기준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희석방법(1 mL 희석액 기준): 물 1,000 mL, 5% 락스 20 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 분 이상, 물품 침적시 30 분 침적

참고문헌

1. Rational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Interim guidance, WHO 2020.02.27
2. A Case Series of children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features. Clin Infect Dis. 2020 Feb 28.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2020.3.2), 환경부
4.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in neonates and children. Arch Dis Child Fetal Neonatal Ed 2005;90:F461-F465.
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disease in children. Pediatr Infect Dis J. 2014 Sep
6. The management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infants and children older than 3 months of age. Clin Infect Dis. 2011; 53 (7): e25–e76.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2020.3.1),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병원급의료기관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2